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2017. 9. 6

아이리스자산운용 주식회사



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17. 9. 6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8조에 따라 아이리스자산운용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“수수료”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와 수수료로서 다음과 같다.

1. 집합투자업자 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2. 판매보수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3. 신탁업자 보수 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4.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5.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: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
6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(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 및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경우에 한한다)
7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,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 판매수수료와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
8. 환매수수료 :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

때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서, 이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안정성과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,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됨

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 ①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,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.

②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성과수수료 부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 ①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, 규모,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②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회사는 집합투자계약 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
④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설명의무) 법 제47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공시 및 통보) ①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② 회사는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회사가 법 제249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을 등록한 날부터 시행한다.